

국제선 여객터미널 빌딩 입관자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

1. 금지 행위

(1)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.

- ① 건물, 시설, 간판 등을 오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.
- ② 주기장에 물건을 던지는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.
- ③ 다음 물건을 반입하는 행위.
 - 가. 폭발물, 발화 또는 인화되기 쉬운 물건, 기타 위험물.
 - 나. 날붙이, 봉,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.
 - 다. 악취를 발하는 물건, 장대한 구조로 건물이나 시설을 오손하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.
- ④ 흡연 장소 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.
- ⑤ 종이 쓰레기, 사용을 다한 용기, 기타 불용물을 소정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수화물 및 기타 물건을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.
- ⑥ 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. 단,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맹도견, 청도견, 간호견 및 항공 화물로 취급되는 경우는 제외.
- ⑦ 택시, 전세 택시/버스 등의 호객 행위.
- ⑧ 연설, 시위행진,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.
- ⑨ 고성방가, 난폭, 기타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.
- ⑩ 항공기 이용자 및 그 관계자 외에 숙박 등 장기간에 걸쳐 체류하는 행위.

(2) 당사의 승낙 없이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.

- ① 출입 금지 표시가 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 또는, 여객이 아닌 자가 여객 통로 등의 여객 전용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.
- ② 불을 사용하는 행위.
- ③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.
- ④ 물품 판매 및 배포 등을 하는 행위.
- ⑤ 간판, 기(깃발), 인쇄물, 서면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.
- ⑥ 사진 촬영 영업을 하는 행위.
- ⑦ 영화나 TV 등의 촬영, 녹화를 하는 행위.
- ⑧ 광고, 선전,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.
- ⑨ 터미널 빌딩 대지 내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. 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방치하는 행위.

2. 입장 제지, 퇴거

다음 경우에는 입장이 거부되며 또는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- (1)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.
- (2) 안전, 위생, 풍기 또는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.

3. 공용의 중지, 제한

다음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터미널 빌딩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용의 중지 또는 사용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- (1) 천재지변, 기타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.
- (2) 시설 수리, 기타 공사를 실시할 경우.
- (3)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.

※자세한 내용은 '국제선 여객터미널 빌딩 사용 규칙'을 참조해 주십시오.

(문의처 : 방재 센터 전화 03-6428-0112)

2010년 10월 21일

도쿄국제공항터미널 주식회사